

#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운영지침

(건설부고시 제1993-578호, 1994.1.4)

## ◇ 주요내용

- 설계방식은 참가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일반공개경기, 제한공개경기, 지명초청경기로 구분한다.
- 시행기관은 참가자격, 추진일정, 설계조건, 입상내용 등 세부프로그램을 일간지에 공고한다.
- 참가설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도서를 최소한으로 억제

하고 설계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 부여한다.

-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경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반수 이상은 건축사 등 건축설계전문가를 위촉, 설계내용 위주로 평가되도록 한다.
- 심사위원의 명단,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한다.
- 공모안은 일정기간 전시한 후 응모자에게 반환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하는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경기질서를 확립하고 건축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건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설계안을 설계경기방식으로 공모·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경기"라 함은 특정사업 또는 구상에 대하여 2인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각기 설계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일반공개경기"라 함은 응모대상설계자를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경기방식을 말한다.
3. "제한공개경기"라 함은 응모대상설계자를 주최자가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설계경기방식을 말한다.
4. "지명초청경기"라 함은 주최자가 설계자를 지명하여 응모하도록 하는 설계경기방식을 말한다.
5. "주최자"라 함은 설계경기를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6. "응모자"라 함은 설계경기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7. "공모안"이라 함은 응모자가 주최자에게 제출하는 설계안을 말한다.

**제4조(설계경기의 종류)** ①설계경기는 응모대상 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경기, 제한공개경기 및 지명초청경기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주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경기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주최자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당해 설계경기의 2이상의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계경기의 시행공고)** ①주최자는 특정사업 또는 구상에 대한 설계경기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설계경기의 목적 및 방식
3. 응모자격
4. 설계경기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5.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6.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7.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8.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9.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10.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
11. 기타 주최자가 설계경기의 시행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 시행공고는 경기시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일반공개경기 및 제한공개경기 : 일간지공고
2. 지명초청경기 : 초청대상자에게 서면통보

**제6조(설계경기의 일정)** ①주최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경기를 시행하는 일정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일시, 등록기간, 질의 응답기간, 공모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중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 제출마감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이상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규모·성격등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사업의 추진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등록)** ①응모대상 설계자는 주최자가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경기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업지침서 및 설계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지침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

관계 등 주최자가 정하는 특정관계에 있는 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1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업지침서)** 주최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응모자가 자의적으로 설계조건으로 설정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질의응답)**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는 당해 과업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도서 등)** ①제출도서의 종류는 심사위원이 당해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응모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공모안은 주최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경기 심사위원회)** ①주최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경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주최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되 반수이상을 건축사 등 건축설계 경험이 풍부한 건축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최자가 과당경쟁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발표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④설계경기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주최자는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주최자는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의 방법·표결방법 및 심사위원장의 선정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사)** ①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건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과정 및 결과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모안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최자 및 그 대리인 또는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13조(입상작)** ①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②입상작은 당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③주최자는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⑤주최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저작권)**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공모안의 전시)** 주최자는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공모안의 반환)** 주최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응모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주최자는 이 지침의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한국설계경기운영위원회가 정한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및 국제건축가연맹(UIA)이 정한 설계경기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세부기준)** 주최자는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부 칙

이 고시는 1994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 ‘건축과 석조기술’에 관한 제 1차 국제회의

‘94.4.25~28일까지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건축과 석조 기술’에 관한 국제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행사에서는 세계 각지로부터 유명한 건축사, 기술사, 시공업자 및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하게 되며, 다채로운 행사내용과 신중한 연사 선정 그

리고 산업관광청을 대신하여 이 행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주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확신합니다.

- 주 제 : ① 2천년대의 인조석 사용  
② 석조사용기술  
③ 석조와 환경  
④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인조석  
⑤ 장식용 석조

○기 간 : 1994. 4. 25~28

○장 소 : 브라질 살바도르 바히아 컨벤션 센터

○등록비 : 일반-US\$ 200 학생-US\$ 120

○기 타 :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주소로 문의 바랍니다.

Av. Sete de Setembro, 2195

40080-002-Salvador/Bahia/Brazil

Phones : 0055-71-4447/5198

Telefax : 0055-71-336-6689